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331
----------	-------

발의연월일 : 2025. 7. 8.

발 의 자 : 백선희 · 강경숙 · 박은정
황명선 · 황운하 · 서왕진
박희승 · 이수진 · 박홍근
손명수 · 김준형 · 이상식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방위산업 수출 확대와 국제 공동개발 사업 참여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국내 방위산업체가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를 임원 또는 직원으로 선임하거나 채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변화는 방산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으나, 동시에 국가안보와 직결된 방위산업기술의 외부 유출 가능성이 있다는 새로운 위험 요인을 수반함.

현행법은 방위산업기술 유출·침해 방지를 위한 기본적 보호체계를 정하고 있으나,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의 방위산업기술 접근에 대한 선제적 위험 식별 및 통제장치는 구체화 되어 있지 아니하여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방위산업체의 경영이나 운영에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가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방위산업기술에 포함된 기밀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방위산업기술 유출 가능성에 대비한 관리계획의 수립 및 점검을 의무화하여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기술의 유출을 사전에 예방하고, 글로벌 인재 활용과 방위산업기술보호 간의 균형 있는 보호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및 제13조의4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은 백선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 및 제13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3(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에 의한 방위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관리 계획 수립 등) ① 대상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이라 한다) 또는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방위산업 분야 기술협력을 위하여 「방위사업법」 제50조의3에 따라 임원 또는 직원으로 선임하거나 채용한 경우에는 방위산업기술 유출 가능성을 고려하여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관리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관리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가 취급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방위산업기술의 종류 및 범위
2.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의 방위산업기술 접근에 대한 보안통제 및 접근 제한 방안
3. 그 밖에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

시하는 사항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관리 계획이 이행되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대상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관리 계획의 수립기준, 점검 절차, 시정명령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4(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의 기밀정보 접근 제한) ①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방위사업법」 제3조제9호의 방위산업체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해당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는 「군사기밀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방위산업기술을 취급·관리할 수 없다. 다만 「방위사업법」 제50조의2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방위산업체의 주식 또는 지분 보유 등을 통하여 사실상 경영권을 행사하는 경우
2. 임원의 임면 등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용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의 방위산업기술 취급·관리를 제한하기 위한 세부기준, 절차 및 예외사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3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군사기밀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방위산업기술을 취급·관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대상기관(행정기관은 제외한다)의 장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3조의3(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에 의한 방위산업기술 유출 방 지를 위한 관리 계획 수립 등)</u> <u>① 대상기관의 장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외국인(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이라 한다) 또 는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 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 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방 위산업 분야 기술협력을 위하 여 「방위사업법」 제50조의3 에 따라 임원 또는 직원으로 선임하거나 채용한 경우에는 방위산업기술 유출 가능성을 고려하여 외국인 및 복수국적 자 관리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 및 복 수국적자 관리 계획서에는 다 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u> <u>1.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가 취 급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방</u>

<신 설>

위산업기술의 종류 및 범위

2.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의 방
위산업기술 접근에 대한 보안
통제 및 접근 제한 방안

3. 그 밖에 방위산업기술 보호
를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정
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
른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관리
계획이 이행되는지를 정기적으
로 점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에는 대상기관의 장에게 시정
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
른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관리
계획의 수립기준, 점검 절차,
시정명령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4(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의 기밀정보 접근 제한) ① 외
국인 및 복수국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
법으로 「방위사업법」 제3조
제9호의 방위산업체에 영향력
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해당

제21조(벌칙) ① ~ ③ (생략)

<신설>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는 「군사기밀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방위산업기술을 취급·관리할 수 없다. 다만 「방위사업법」 제50조의2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방위산업체의 주식 또는 지분 보유 등을 통하여 사실상 경영권을 행사하는 경우

2. 임원의 임면 등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용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의 방위산업기술 취급·관리를 제한하기 위한 세부기준, 절차 및 예외사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벌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3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군사기밀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방위산업

④ ~ ⑦ (생략) 제2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략) <u><신설></u> 4. (생략) ② (생략)	<u>기술을 취급·관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⑤ ~ ⑧ (현행 제4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 제24조(과태료) ① ----- ----- -----. 1. ~ 3. (현행과 같음) <u>3의2.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u> <u>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u> <u>대상기관(행정기관은 제외한</u> <u>다)의 장</u>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